

천재적인 지능보다 꾸준히 노력 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송진규

- 안양 성문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재학
- 2017년도 5급 공채 법무행정직렬 수석합격

I. 서론

아직까지도 진짜 내가 합격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곤 하는데 사전교육을 다녀오고 나니 비로소 조금이나마 실감이 납니다. 입교 전에 마지막으로 5급 공채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기를 쓸 기회를 주신 고시계 편집국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수험생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과목별로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교재를 보았는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수험생활을 겪으면서 한 고민, 실패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발견해낸 해답과 법무행정직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법무행정직이 일반행정이나 재정직에 비해 현저히 정보가 부족하고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II. 강의와 교재 선정에 관하여

서두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보았는지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본문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공부자료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의와 관련하여 행정법과 행정학은 다른 직류와 공통과목이므로 5급 공채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대신 행정법

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강의가 개설되고 있었으므로 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5급 공채 3순환을 1차 시험 이전에 개강하는 사시 2순환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상법) 강의는 사시강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 또는 1순환 정도의 이론 강의만 들었으므로 사시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지금으로써는 변호사시험, 변리사, 노무사 등 타 시험 대비 강의를 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대신에 교재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들은 강사가 사용한 교재를 교과서로 삼고 사례집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민법과목이라고 해도 사법시험은 사례하나에 약 10-15점 정도의 배점으로 4-5문제가 함께 출제되고, 법원행시는 매우 긴 사례에 결론, 주장 1 및 주장 2의 당부판단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며 입법고시는 약술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변호사시험은 10-20점(5급 공채로 변환시 약 7-13점) 정도의 소문항이 여러 개 출제되는 등 시험마다 요구하는 답안이나 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급 공채 법학과목 기출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이 거의 없는 관계로 여러 문제집을 비교하다 겨우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광사에서 출판한 AURA 기출백서 시리즈에 5급 공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답안 분량이 실제 답안지에 옮기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문제와 현출해야 하는 논점만 참고하고 실제 답안에 쓸 내용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Ⅲ. 답안작성에 관하여

답안작성의 기본적 원칙은 100점 배점(선택 과목의 경우 2를 곱하여 산정)에 답안지가 10페이지이므로 10점당 1페이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40점 문제에 약 3.5페이지 내외, 30점 문제에 2.5페이지 내외로 실제 작성한 분량만을 따지면 과목별로 약 8.5-9페이지 정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반드시 10점당 1페이지를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채점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너무 분량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5급 공채 법학과목은 대부분 논점제시 없이 사례에서 논점을 추출해내고 그에 대한 당부판단을 하도록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도록 소위 불의타 문제가 특히 민법과목에서 종종 출제되니 최대한 관련된 내용을 모두 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잘 아는 논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가급적 정형화된 목차를 미리 구성하고 여러 번 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관련된 문제에서 주된 논점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서도 현출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아래 예시와 같이 하나씩 목차를 잡아 쓰면 논점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3년차까지 법학과목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처음 눈에 띈 논점에만 너무 집중해서 쓰는 바

람에 누락한 논점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과목에서 10점 이상 점수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목차구성에 있어 채점자의 입장에서 훨씬 편해보였기 때문에 각 논점별로 소목차를 잡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채점자를 법학이나 행정학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답안작성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일반인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문〉 - 2017년 민법 제1문 참고

I. 설문 1)에 관하여

1. 문제의 소재
2.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의의 및 요건
 -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의의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날 경우 법전을 참고해서라도 의의를 적되 가급적 이 소송, 권리 및 제도 등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 혹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 등을 함께 적어줄 것
 - 2) 피보전채권의 존재
 -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분량에 따라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별도의 목차로 나눌 수도 있을 것
3. 사안의 경우
 丁의 채권발생일이 불분명하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간략히 언급할 수 있을 것
4. 결론

II. 설문 2)에 관하여 (후략)

〈그림 1〉 답안 목차예시

VI. 서브노트 작성에 관하여

1. 서브노트 필수 여부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것은 수많은 공부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합격자들이 공부한 것을 들어봐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험 전일 하루에 모든 범위를 복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 또는 사례집에 단권화를 하는 방식이든 어떤 다른 방식이든 마지막 날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적합할지를 미리 충분히 고려해서 공부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작성 방식

저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 서브노트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1.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다보니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방해받았다는 점과 2. 글씨가 악필이라 가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및 3. 통학시간동안 버스에서 정선균 박사님의 핸드북을 보면서 다녔는데 이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맷은 익숙한 핸드북 양식에 맞추어 2단 편집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별도로 만들어서 찾아보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디자인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서 목차를 그대로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만들 것인지 논점별로 별도로 목차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한 목차에 너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게 되면 요약으로서의 서브노트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p>상법총칙-상행위편</p> <p>상인의 개념 -5-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5- 지배인 -6- 표현지배인 -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자 -8- 상업등기 -9- 부실등기의 효력 -10- 상호권 -11- 명의대여자 책임 -12- 영업양도 -13- 상사법정미율과 상사소멸시효 -15- 상사유지권 -15- 상사질권 -17- 상사채무 및 상사보증의 연대책임 -17- 상사매매의 특칙 -18- 위탁매매업 -19- 운송주선업 -20- 운송업 -20- 공중질결업 -22-</p> <p>회사편</p> <p>법인격 부인론 -25- 회사의 권리능력 -26-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27- (주식)회사의 설립 -27- 설립중의 회사 -29- 반대설립사항 - 현물출자를 중심으로 -30- 가장납입 -31-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32- 발기인의 책임 -33-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3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5- 주권의 신의취득 -35- 명의개서 -36- 명의개서미발주주의 지위 -37-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37- 주식의 양도 -38- 권리주 양도의 금지 -38-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금지 -39-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40-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1- 주식매수선택권 -42- 주식의 입질 -43-</p>	<p>주식의 양도담보 -44- 주주총회의 권한 -45-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하자 -45- 주주제안권 -46- 의결권 -47- 의결권의 대리행사 -48- 주주총회의 결의 -49- 영업양도의 특별결의 -50- 종류주주총회 -50- 총회결의취소의 소 -51-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소 -52- 이사 -53- 이사회 -55- 대표이사 -56- 위법한 대표행위 -57- 표현대표이사 -58- 이사의 의무 -5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60-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무 -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1- 경영판단의 법칙 -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3- 업무집행관리자의 책임 -63- 이사의 자본총실책임 -64-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4- 주주의 대표소송 -65- 이종대표소송 -65- 신주발행결차 -66- 주주의 신주인수권 -67-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8- 통모인수인의 책임 -69- 신주발행무효의 소 -69- 준비금의 자본금진입에 의한 신주발행 -70- 이익배당 -71- 주식배당 -72- 주주의 경영감시 -73- 합병 분할무효의 소 -74-</p> <p>어음·수표법</p> <p>어음·수표의 주요개념 -79- 어음상 권리의 취득 -81- 어음채무의 성립시기 -81-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82- 어음행위의 대리 -82- 무권대리의 효과 -83-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84-</p>
--	--

<그림 2> 서브노트 목차 예시

논점별로 목차를 만들어 가급적 한 논점에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편집했습니다. 또한 사례집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례집이 분량이 답안지의 양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나 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서브노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갖는 다른 장점은 실제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쓸 때에 분량적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해지고,

법학에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암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며, 답안이 주는 인상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답안을 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관례나 교과서의 문구를 완전히 재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 간결하게 요약된 것으로 보이는 정도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2017년 상법 기출 부분 서브노트 부분을 첨부하니 이를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

1.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설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원인과 연대하여 손해할 책임을 진다(제24조). 이는 명의차용자의 외관 창출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에 나아간 제3자에 대해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외관주의 법리가 근거를 두고 있다.

2. 외관의 부여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설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이 포함된다. 이때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의차용자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법률에 의해 명의대여가 금지되어 있어 명의대여가 주요로 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된다(한편).
명의대여자가 단순히 1회에 한하여 허락한 경우에는 계속성이 없어 상법 제24조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

3. 외관의 신뢰
거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였어야 하는데 이때 오인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상거래에서의 중요성은 의의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인에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 역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때 양자는 부진정대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반제할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명의의 동일성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반드시 동일할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일성불요설과 동일성불요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성불요설의 입장이나 동일성의 개념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호명업과 호명부속 나이트클럽업 같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동일성불요설과 유사한 결론**을 이루고 있다.
상대간에 상호가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점, 상법 제24조에서 영업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성불요설이 타당하다.

3) 상인자격 요부
상법 제2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모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여야 하나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판례 역시 명의대여자가 공법인인 인천직할시였던 사안에서 인천직할시에 대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동상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림 3〉 서브노트 예시 01

가장납입

1. 의의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금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액치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밝히기 영업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장납입이라 한다. 가장납입에는 금융기관과 법기인이 결정하는 '통로 가장납입'과 '법기인 단독으로 하는 '위장납입'이 있다. 통로가장납입의 경우 금융기관이 엄격한 채무를 지게 되므로(제318조 제2항) 현실적으로는 주요 위장납입¹⁵⁾이 존재한다.

2. 효과
대법원은 위장납입자라도 공판의 이통에 따른 **현실의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처분등으로 이루어지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납입요효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자본총실이념은 주식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정하는 가장납입은 납입요효설이 옳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회사설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례와 같이 위장납입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다른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회사설립의 효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납입이 무효라고 보게 되면 위장된 부분만 자본본의 총액이 발생하고 그 총액이 현저할 때는 상법무효의 소(제28조)의 원인이 되나, 총액이 경미한 때에는 법기인제 제321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회사설립을 무효로 할 수 없다.

15) 법기인이 보관은행 외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주금액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유형의 가장납입.

M.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1. 법기인의 책임 ★★
1) 자본총실책임
판례에 따라 납입이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위장납입된 부분도 납입이 완료된 것이므로 회사는 법기인에게 자본총실책임(제321조 제2항)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납입을 무효로 보게 되면 상법 제321조 제2항에 따라 납입된 본복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총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총실책임을 충족하는 것이 훨씬 용이(법정 무과실책임)하므로 다수의 견해와 같이 납입을 무효로 보아 자본총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총실이념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

2) 손해배상책임
가장납입의 효력에 대한 권리와 무관하게 위장납입은 법기인이 회사설립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법 제322조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아가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소유재산은 주식인수납입금을 무담으로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부담행위로부터 면탈할 경우를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3) 그 밖의 책임
법기인은 상법상 특별책임(제622조), 납입금 감정(제628조) 등의 회사책임을 지나 위장납입행위를 함상법 업무상행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한편). 판례에 따르면 주식인수인은 제당납입 주금반환의무를 지고 법기인은 일정 주식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므로 법기인도 제당납입주금반환의무가 있다.

2. 이사의 책임
이사가 설립 후의 회사의 보관은행에 예치된 주금액의 인출 및 반환에 관한 경우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제40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림 4〉 서브노트 예시 02

V. 공부범위에 관하여

다른 과목의 경우 당연히 전 범위가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민법 과목에서 친족상속권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크게 친족상속권에 주로 속하는 논점(예컨대 인지, 유류분 등)만 제외된다는 입장과 재산법에 속하는 논점 가운데 친족상속권과 연관이 있는 논점(예컨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까지도 제외된다는 해석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수험생의 몫이겠지만 그 판단을 위한 도구로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여 공부범위를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판단은 재산법에 속하는 내용이라면 친족상속권과 일부 관련이 있어도 출제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14년 제3문 및 16년 제3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가부 및 상속인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17년 제2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꾸준히 친족상속권과 일부 관련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과목과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빈출 주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의 경우에는 회사편에서 25점 + 그 밖의 영역에서 25점 형식으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밖의 영역에서도 총칙이나 상행위편이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어음·수표법과 보험편이 번갈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험편의 출제빈도가 더 높아 결론적으로 회사편 > 총칙·상행위편 > 보험편 > 어음·수표법 순으로 중요도를 선정했습니다.

VI. 법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에 관하여

1. 비전공자의 진입에 관하여

실제로 합격자 가운데 대부분이 법학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진로를 바꾼 경우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5급 공채시험만 준비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은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학교수업을 듣거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비법학사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학과목의 공부분량이 방대하긴 하지만 민사소송을 이해하면 행정소송 이해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처럼 법학과목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다른 사회과학과목과 달리 관례에 의해 어느 정도 답안에 작성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이 모든 직렬의 공통과목이므로 전혀 법학을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학과목을 너무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선택과목 선택에 관하여

작년 기준으로 합격자 대부분이 상법을 선택했고 두 분이 노동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은 사법시험 2차 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노동법은 노무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강의와 교재 선정에 있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상법을 선택과목으로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사법시험 강의를 들었는데 상법과목의 장점으로는 강의나 교재의 선택의 폭이 넓고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공부하면서 강약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불의타 까지 대비하려면 공부분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투입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경제학이 법무행정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학이 포함된 다른 직렬에서 직렬을 변경하거나 경제학을 전공한 경우에는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특성상 70점(선택과목으로 변환시 35점) 이상을 득점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제 상법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36.33점에 불과하여 만약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삼고 4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다면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스터디에 관하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터디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스터디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 고시반이나 지인을 모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까지 매일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에서 통학을 하였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당연히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지만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만한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공부의 방향성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터디가 있다면 서로 강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정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그런 기회가 없으므로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 교과서를 교차검증하여 자신이 이해한 것이 옳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단기 일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일정까지 미리 계획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통 행정법과 행정학까지는 학원 3순환 일정을 따라가면 무난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일정을 계획해서 공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17년 기준으로 민법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과 상법에 할애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두 과목 서브노트는 16년에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2차 시험을 15일 앞두고 다섯 과목 모두 최소한의 준비를 끝낼 수 있었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실현가능한 중·장기 일정을 마련하고 그에 맞추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심리적 마감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전반적인 일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VII.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며 실제로 법무행정 동기들을 보아도 다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기를 쓸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꾸준히 공부했던 것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이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면 일반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뛰어난 인재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천재적인 지능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이 2013년 여름방학 때부터였으니 만 4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번 2차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 시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법서를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쉬운 법리 하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두 번, 세 번씩 인터넷 강의를 다시 돌려보고 겨우 이해할 정도인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만큼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험생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원하는 결과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무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줄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